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150
----------	------

2021년 2월 25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1년 2월 5일, 이광성 의원
- 나. 회부일자: 2021년 2월 9일
- 다. 상정일자: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1년 2월 25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이광성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시장이 폐기물배출자, 재활용사업자 등의 단체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함.
- 나. 주요골자
 - 시장이 폐기물 관련 단체 등과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함
(안 제4조의6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4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: 이재효)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폐기물배출자·재활용사업자·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8(자발적 협약의 체결)에 따르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폐기물배출자·재활용사업자·제조사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 협약의 목표, 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
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〉

법 제34조의8(자발적 협약의 체결)

-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·재활용사업자·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(이하 "자발적 협약")이라 한다)을 체결할 수 있다.
-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·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5조의2(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)에서는 자발적 협약 체결 시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〉

법 시행규칙 제25조의2(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)

-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
 - 2.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
 - 3.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
 - 4.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,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폐기물 관련 개인이나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협약 체결 시 고려 사항과 이행에 필요한 지원 및 이행 여부 확인 등을 명시하여 자발적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.

이는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안이며,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, 조례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의견은 없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6(자발적 협약의 체결)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·재활용사업자·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(이하 “자발적 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
2.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
3.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
4.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,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4조의6(자발적 협약의 체결) ①</u>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·재활용사업자·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(이하 “자발적 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할 수 있다.</p> <p><u>②</u>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</u> <u>2.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</u> <u>3.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</u> <u>4.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 <p><u>③</u>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<u>④</u>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,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</p>